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1712
----------	------

2020년 9월 15일
보건복지위원회

I.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0년 8월 10일 이정인 의원의 22명
2. 회부일자 : 2020년 8월 21일
3. 상정일자 : 제296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0년 9월 2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 (이정인 의원)

1. 제안이유

-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학대는 등록장애인만이 아니라 미등록 장애인에게도 심각한 정서적, 신체적 영향을 줄 수 있음. 그러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복지서비스나 권익옹호가 등록 장애인 위주로 운영되어 온 것이 사실임.
- 장애등록이 어려운 정신질환자의 경우를 살펴보면, 현재 한국의 정신장애인 등록은 10만 3천명 수준임. 그러나 전문가들은 미등록 장애인이 3배는 더 있을 것이라고 추산하고 있음.

- 장애의 판정은 의학적 기준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게 되어 장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의학적 판단근거에 미흡한 경우 등록장애인이 될 수 없음. 이에 사회적으로 장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의학적으로 장애가 없는 모순적 상황에 놓이게 됨. 예를 들어 몇 년 전 발생한 유명 바이올리니스트에 대한 학대 사건 피해자의 경우 정신장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등록 장애인이었음.
- 그러나 미등록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의 사각지대로 존재하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2018년부터 시행되었으나 기존의 등록 장애인 위주의 구제 경로를 크게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이에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정신질환자를 포함한 미등록 장애인들이 적절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미등록 장애인과 등록 장애인을 포괄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사업적 안정성을 높이고자함.

2. 주요내용

- 인권증진 대상 장애인을 미등록 장애인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조제2호)
-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의 위·수탁 기간과 관련하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도록 함.(안 제9조의3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참조

Ⅲ.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이문성)

1 개정안의 취지

- 본 조례 개정안은 장애인 인권증진 대상을 등록장애인 뿐만 아니라 미등록 장애인에 대해서도 포괄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사각지대를 없애고,
-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의 위·수탁 기간과 관련하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도록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위탁운영 근거를 명확화하기 위해 제안되었음.

2 개정안의 주요내용 검토

가. 인권증진 대상에 미등록 장애인을 포함하는 내용에 관하여

- 본 조례 개정안의 상위법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1)에서도 장애를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로 정하고 있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대상을 등록 장애인으로만 한정하고 있지 않음.

1) 제2조(장애와 장애인) ①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의 사유가 되는 장애라 함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②장애인이란 함은 제1항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 그러나, 본 조례가 인권증진 대상을 등록 장애인으로만 한정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등록 장애인과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있는 사람도 장애인 인권증진 대상에 포함하도록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미등록 장애인들이 적절한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 또한, 장애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유명 바이올리니스트가 사기피해를 당한 사건에 대하여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²⁾에서 지원한 사례가 있으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5의3]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세부운영기준」³⁾에는 미등록 장애인도 등록 장애인과 동일하게 신고접수, 현장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과거 조울증과 양극성 장애를 앓으며 소속사로부터 학대를 받았던 바이올리니스트가 교체된 매니저에게서도 또 착취를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는 바이올리니스트의 현 매니저를 사기와 업무상배임, 횡령 등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하였음.⁴⁾

2)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상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 → 서울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음.(2018.7월 개정)

3) 1. 미등록장애인에 대한 조치

장애인학대의 피해자가 미등록장애인인 경우에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은 등록장애인과 동일하게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대피해자인 미등록장애인이 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관계기관에 연계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4) 자료출처 : ‘유진박, 새 매니저에도 역대 착취당해’ 경향신문 기사 2019. 6. 10.

나.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위탁운영 관련 개정안에 관하여

- 금번 조례개정안의 대상이 되는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9조에서는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설치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위탁기간 등 위탁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내용은 없음.
-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4항5)에서 장애인인권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 동 시행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는 규정은 있으나, 본 조례에는 근거가 없으므로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다. 조례 개정안 관련 집행부 의견 : 원안동의

- 등록장애인 뿐만 아니라 미등록 장애인도 포괄하여 장애가 있는 대상자들의 권리구제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이견이 없으며,
- 또한,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위·수탁시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조례에 관련 근거가 없어서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추진 중이므로 조례 개정을 통해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므로 이견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5) 제3조(장애인인권센터의 기능) ④ 그 밖에 센터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장애인 인권증진 대상을 등록 장애인으로만 한정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인권증진 대상을 포괄적으로 해석하여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미등록 장애인들에 대해서도 적절한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며, 본 조례 개정안의 상위법(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장애를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로 정하고 있고 등록 장애인으로만 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위법과 조례 간 상충될 여지는 없음.
- 또한,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명확한 위탁운영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의 운영상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 가결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정인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1712
----------	------

발의년월일 : 2020년 8월 10일
발 의 자 : 이정인, 전병주, 박순규,
양민규, 김호평, 문병훈,
문장길, 권영희, 정진술,
김경우, 이광호, 김창원,
김화숙, 이준형, 김재형,
이상훈, 채유미, 박기재,
김경영, 정진철, 최정순,
성흠제, 우형찬 의원(23명)

1. 제안이유

-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학대는 등록장애인만이 아니라 미등록 장애인에 게도 심각한 정서적, 신체적 영향을 줄 수 있음. 그러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복지서비스나 권익옹호가 등록장애인 위주로 운영되어 온 것이 사실임.
- 장애등록이 어려운 정신질환자의 경우를 살펴보면, 현재 한국의 정신 장애인 등록은 10만 3천명 수준임. 그러나 전문가들은 미등록 장애인이 3배는 더 있을 것이라고 추산하고 있음.
- 장애의 판정은 의학적 기준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게 되어 장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의학적 판단근거에 미흡한 경우 등록장애인이 될 수 없음. 이에 사회적으로 장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의학적으로 장애가 없는 모순적 상황에 놓이게 됨. 예를 들어 몇 년 전 발생한 유명 바이올리니스트에 대한 학대 사건 피해자의 경우 정신장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고 미등록 장애인이었음.

- 그러나 미등록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의 사각지대로 존재하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2018년부터 시행되었으나 기존의 등록 장애인 위주의 구제 경로를 크게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이에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정신질환자를 포함한 미등록 장애인들이 적절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미등록 장애인과 등록 장애인을 포괄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사업적 안정성을 높이고자함.

2. 주요내용

- 가. 인권증진 대상 장애인을 미등록 장애인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조제2호)
- 나.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의 위·수탁 기간과 관련하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도록 함. (안 제9조의3제2항)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
-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참조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장애인에”를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장애가 있는 사람에”로 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장애인’이라 함은 제1호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사람(「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과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제9조의3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서 기관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u>장애인에</u> 대한 차별과 장애인 학대 등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생략)</p> <p>2. ‘장애인’이라 함은 제1호에 따른 <u>장애가 있는 사람</u>을 말한다.</p> <p>3. ~ 6. (생략)</p>	<p>제1조(목적) ----- ----- ----- <u>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장애가 있는 사람</u>에 ----- ----- ----- -----.</p> <p>제2조(정의) ----- -----.</p> <p>1. (현행과 같음)</p> <p>2. ‘장애인’이라 함은 제1호에 따른 <u>장애가 있는 사람</u>으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사람(「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증을 소지한 사람)과 <u>장애인을 등록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있는 사람</u>을 의미한다.</p> <p>3. ~ 6. (현행과 같음)</p>

제9조의3(운영 위탁) (생략)

<신설>

제9조의3(운영 위탁)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서 기관
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목적)과 제1조(정의) 제2호의 개정을 통해 장애인의 범주에 미등록 장애인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내용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장애등록률은 94.1%로(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추정되지만 미등록장애인과 관련된 인권침해, 차별, 학대피해 현황 파악 등이 어려워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움
 - 제9조의3(운영 위탁) 제2항의 신설에 따른 별도의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 가. 의안이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제3조제1항제2호)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승우

정책조사팀장 여차민

주 무 관 채소영

☎ 02-2180-7942

e-mail : liz1998@seoul.go.kr